		진 료	확 인 서		
차트번호:	_				
면 번 호 :	_				
성 명		성 별	○남 ⊙며	연 형	만 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 원			부터		
			까지 (일	간)	
통 원			부터		
			까지 (일	간)	
	쾰				
실 통원일자	월				
	월				
		상기와 같이 진	료 받았음을 확인		
발 행 일					
의사 성명 면허 번호 제		0			
주소 및 명칭	,				
전화 변호		(FAX)			
			병원장		
	нино т	O-LUM TICLU	를 발급 받으시기	ulsh ici	

챠트번호: 연 번호:	진 	료	확 (인 서	(학교)	데출	용)		
성 명		Т	성 별	0남	⊙ ¤	Т	연 령	만	세
주민등록변호									
주 소									
원 입		년 년	월 월		일 부터 일 까지 (9	[간)		
통 원		년	훨		일 부터 일 까지 (잍	[간)		
실 통원일자	월								
	월								
	월								
의 사 소 견									8
발 행 일 의 사 성명 주소 및 명칭 전화 변호	(같이 (면허 !		있음을 제		호		
							병원장		

소견서와 진료확인서

Q.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하여 교부하는 소견서 이외에 보험회사 등 요구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기준 있는지?

현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일반진단서, 입원 및 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은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소견서, 촉탁서의 비용은 가1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원칙으로 같은 증명서의 개념이나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료비추정서, 정신감정서 등은 법적 보상이나 배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며,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Q. 소견서에 대하여 정해진 소정양식이 있는지 여부 및 양식이 없다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교부해도 무방한지?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음.

Q.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하여 교부하는 소견서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진료 종료 후 당일 발급하는 소견서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견서 비용을 받지 않고 추후 환자나 가족 보험사(환자동의서 지침)등으로부터 요구 시 발급하는 소견서 비용을 받아도 무방한지?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 보여지며 이를 교부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

Q. 학교나 보험회사 등 요구에 의해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기준 있는지(병명을

기재하는 경우 또는 병원 내원일만 기재하는 경우 등)?

진료확인서는 본인이 신청하여 교부 받는 것이 타당하며 병명의 기재 등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Q. 진료확인서에 대하여 정해진 소정양식은 있는지 양식이 없다면 요양기관에서 임으로 작성하여 교부해도 문제가

진료확인서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없는지 와 교부 시 병명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지?